

유럽統合과 環境라벨制度

정만기 서기관 (통상산업부, 경제학 박사)

I. 서언
II. Eco-labelling제도의 실시배경 및 실시현황
III. EU의 환경라벨제도
IV. EU의 CE마크제도
V. 우리의 대응

I. 서언

4차에 걸쳐 유럽통합이 확대²⁰⁾되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일명 유럽연합조약)이 체결되어 유럽통합이 심화²¹⁾됨에 따라, EU는 각 회원국의 각종 제도를 통합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각종 제도, 표준 및 규범을 회원국간 일치화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EU의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오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EU내에서는 CE마크제도의 확대실시, Eco-labelling시스템의 회

20) EU의 원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 등 6개국이었으며,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된 후, 1981년에 그리스가 가입하고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12개회원국 체제를 유지하여 오다, 1995년 스웨덴, 오스트리아 및 핀란드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현재 EU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1) WTO의 EU의 무역정책리뷰(Trade Policy Review, 1995)에 의하면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일명 유럽연합조약)으로 유럽연합이 출범한 이후, EU는 경제, 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3단계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통합을 심화하고 있으며, EU탄생후 역내장벽을 위하여 도입된 1,300여개의 단일시장조치에 대한 15개 회원국의 평균이행실적이 약 90%에 이르는 등 EU역내장벽은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원국내 확대적용 및 Eco-label이 적용되는 제품집단의 확대검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OECD와 WT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라운드 등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통합과정에서 EU가 환경보호를 위하여 취하여 온 여러문제들을 다 논의하기보다는 우리상품의 EU진출과 관련되어 있는 Eco-labelling 시스템과 CE마크제도를 중심으로 최근 EU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기업과 정부가 대응하여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Eco-labelling제도의 실시배경 및 실시현황

1993년 EU통합이 심화되기 이전, EU의 각회원국들은 기업들의 환경친화적 상품생산을 촉진할 목적으로 각 국가별로 고유한 환경라벨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환경기준(Norme Francais Environnement)’ 제도가, 독일의 경우에는 ‘녹색천사계획(Blue Angel Programme)’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자연보전을 위한 ‘자연보호를 위한 스웨덴 사회(Swedish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 계획이 실시되고 있었다.

〈표 1〉 유럽 주요국의 환경라벨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 프랑스 환경기준 (Norme Francais Environnement) · 독일 : 녹색천사계획 (Blue Angel Programme) · 노르웨이 : 백조 (White Swan)* · 화란 : Milieukeur · 스웨덴 : 자연보호를 위한 스웨덴사회(Swedish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환경라벨 (Austrian Eco-label)

주 : *노르웨이는 EU회원국이 아님

이러한 다양성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에서는 1992년 EU Regulation²²⁾880/92, 즉 환경라벨법(the Eco-labelling Regulation)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같은 EU에 확장된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것은

EU 역내교류에서 각 회원국이 개별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류와 관련된 물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확대된 환경라벨제도는 또한 검사나 포장과 관련된 비용을 절약시켜 주었다.

더욱이 하나의 EC eco-label제도는 그때까지 환경라벨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EU회원국, 특히 프랑스보다 남쪽에 위치한 남유럽국가들에게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제도는 그후 유럽경제지역(the European Economic Area)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EC eco-labelling제도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노르웨이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EU차원의 제도와 EU 개별회원국 제도들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병존은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 아래에서 우리는 EU제도를 운영현황과 EU역외국의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EU의 환경라벨제도

EU의 환경라벨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제품에 대하여 eco-label을 취득한 기업들은 단지 상업마켓팅상 유리한 입장에 서는 데 불과한 실정이다. 다시말하여,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들이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co-label을 사용할 수 있으며, eco-label을 사용하는 권리는 수수료의 지불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래에서는 eco-label제도를 위한 환경기준 설정절차, eco-label의 적용문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 제품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EU의 eco-label 제도에 대하여 EU의 비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 불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 EU의 법령에는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과 Regulation의 4종류가 있는 바, Regulation은 국가별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모든 EU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갖고 적용되며, Directives는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나 그 시행방법은 각 국에게 위임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경우에 국가별로 시행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거친 후에 발효되며, 이는 Directive에 유예기간이 설정되도록 한다. Decision은 법령에 명시된 개체에만 강제 적용되며, 국가별 입법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Recommendations은 법령이 아니며, 구속력도 없다.

1. 환경기준 설정절차

앞서 밝힌 바 있는 Eco-label Regulation은 환경라벨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이 법은 EU의 eco-label제도를 설치하는 절차와 정의된 제품집단의 제품들에 대하여 eco-label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그의 주도로 혹은 회원국들의 권능있는 집단의 요구로 일정한 제품집단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충족되어야 하는 환경기준은 집행위의 결정(Decision)으로 제품집단별로 설정된다. EU집행위는 특정 상품집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산업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청문회는 특별 “청문회(consultation forum)”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상품집단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집행위는 각 회원국 대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만일 이 위원회가 기준을 설정하는 결정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위원회는 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3개월이내에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모든 상품정의와 이와 관련된 환경기준은 채택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2. 환경라벨의 사용

제조업자들은 제품이 생산되거나 처음 출시되는 EU회원국내에서 혹은 제품이 처음 수입되는 회원국내에서 환경라벨을 사용(apply)할 수 있다. 사용은 관련 회원국에 의하여 지정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허락된다. EU역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 환경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EU집행위는 성공적 사용과 실패한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기록에서 사용이 이미 이루어졌는 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환경라벨을 사용함에 있어 독립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검사결과, 인증 및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시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환경라벨이 부착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한다. 그 기관은 EU집행위에 그의 결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권한있는 기관이 그의 사용을 거절하였다면, 그 기관은 EU집행위와 사용자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능력있는 기관이 부착을 허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EU집행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위는 다른 회원국의 능력있는 기관에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정사본을 보내야한다. 만일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어떤 권한있는 기관도 환경라벨의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결정은 집행되게 된다. 만일 반대가 제기되면, 집행위는 위원회 절차에 따라 결정을 취하게 된다. 만일 eco-label이 부착되려면, 사용자는 표준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사용절차와 환경라벨의 부착과 관련된 수수료(Fees)는 EU집행위 결정(Commision Decision)의 토대위에서 설정된다. 환경라벨의 사용에 필요한 수수료는 500ECU로 고시된다. 그러나 권한있는 기관은 그의 판단으로 그들의 수수료를 20% 높게 받거나 20% 낮게 받을 수 있다. 환경라벨을 사용할 때는 기업은 매년 그의 판매량의 0.12~0.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들 비용에는 어떤 검사비용도 포함하지 않는다.

3.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

EU의 Eco-label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cradle-to-grave)” 접근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바, 이는 환경적 기준이 원료로부터 그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한 제품의 완전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제품집단에 ‘특이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본법(The basic Regulation)에 의하면, 모든 환경라벨제품들이 아래와 같은 일반적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우선, 제품은 공동체의 건강, 안전 및 환경요구수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제품은 Directives 67/548/EEC와 Directive 88/379/EEC에 따라서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이나 조합제가 되서는 안된다. 그러나, 환경라벨은 ‘특이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그와같은 물질이나 조합제(Preparations)를 포함하는 제품들에 부착될 수 있다. 셋째, 제품은 인간 혹은 환경, 인간과 환경에 상당히 손해를 끼치기 쉬운 공정(processes)에 의하여 제조되어서는 안된다. 특이한 기준은 제품집단마다 다르다.

4. 제품의 범위

현재 환경적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집단은 세탁기(washing machies), 식기세척기(dishwashing machies), 분뇨처리기(soil improvers), 키친롤(kitchen rolls), 화장

지(toilet paper), 세탁청정제(laundry detergents), 전구(single-ended light bulbs), 페인트와 왁스(paints and varnishes), 침대시트, 베갯잇 및 티셔츠(bed-linen and T-shirts), 복사지(copying paper) 및 냉장고(refrigerators) 등 11개 제품집단이다.

이외에도 현재 EU는 신발, 양말 등 신는 것(footwear), 침대매트리스.bed mattresses), 그로잉 미디어(growing media), 절연물질(insulation materials), 헤어스프레이(hairspray), 캣리터(cat litter), 소비재를 위한 배터리(batteries for consumer goods), 바닥청소제(floor cleaning products), 위생청정제(sanitary cleaning products), 식기세척기를 위한 청정제(detergents for dishwashers), 샴푸(shampoos), 가축똥(rubbish bags), 재생지제품(converted paper products) 등 13개제품집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환경기준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음식물(foods), 음료수(drinks) 와 의약품들(pharmaceuticals)는 기본법의 범위에서부터 배제된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독립되거나 강제적인 입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을 제외한 다른 어떤 제품도 명시적으로 기본법의 범위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5. EU역외국의 Eco-label제도에 대한 의견 및 불평

Eco-labelling시스템에 대해서는 WTO의 무역과 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약간의 WTO회원국들, 특히 미국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우선, 약간의 WTO국가들은 eco-labelling제도는 충분히 투명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이들은 EU의 어떤 제도들은 정치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보호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둘째, 약간의 WTO국가들은 제품수명분석,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제품수명분석을 위한 제도가 국제적 방법론과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적인 장벽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Eco-labelling 제도가 기술장벽협정(The Agreement for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관련되느냐의 문제이다. 약간의 WTO국가들은 제품특징과 관련없는 생산공정과 방법에 대한 표준들은 이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EU의 CE마크제도

이같은 환경라벨제도의 실시로 환경보호활동에 적극 나서는 이외에도 CE (Communaute Europeenne) 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EU는 환경, 건강, 안전을 이유로 기업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오고 있다.

1. CE마크제도 현황

EU는 신접근방법(New Approach)에 의거, 97년 3월 현재 완구안전, 전자기 적합성, 비자동저울 등 18개분야에서 CE마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유럽에서 유통되는 전상품의 20%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CE마크제도의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CE마크제도는 환경라벨제도와는 달리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마크의 대상품목으로서 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제품은 EU내에서 유통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상품의 대EU시장접근과 관련하여 환경라벨제도보다 더욱 많은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EU는 신접근방법(New Approach)에 의거,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 및 안전요건들만 명시하고 이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격의 개발은 유럽표준화기구²³⁾에 일임하고 있는 데, 이들 표준화기구에서는 97년 3월까지 5,000여개의 EU규격을 제정한 바 있으며, 하루평균 5개의 새로운 EN규격이 제정되고 있어, 이러한 규격제정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관련된 CE.마크 취득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말하여 주고 있다.

2. 우리기업에 주는 영향


CE마크제도는 우리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현재에도 작용하고 있는 바, 96년 금액기준으로 우리의 대EU수출품목중 34.5%가 강제인증대상품목인 상황에서, 전자제품의 경우 CE마크 취득에 평균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600만원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23) 유럽의 표준화기구에는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가 있으며, CEN은 전기통신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유럽규격을 개발하며, CENELEC는 전기분야의 유럽통일규격을 개발하고, ETSI는 통신분야의 유럽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더욱이, EU는 최근 자동차안전기준강화 및 전자제품에 대한 CE마크제도의 추가 실시로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V. 우리의 대응

우선, Eco-label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이 제도가 강제적 시행제도로 변화되지 않도록 미국, 일본 등 이해관계국과 연계하여 꾸준히 EU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eco-label제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술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EU와 협의하여 가야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에 노력하여 EU의 환경규제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CE마크제도의 실시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정부는 금년에 한·EU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호인정협상이란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²⁴⁾를 체약국간에 상호인정하는 협정이다. 동 협정을 양국이 체결하는 경우 양 체약국간에는 협정에 명시된 적합성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ies)이 발행한 시험성적(test reports) 또는 인증서(certificates)나 마크(marks)를 상호인정하게 되어 무역과 관련된 기술장벽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양체약국간 교역을 원활히 하게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아무튼 EU의 CE마크제도가 요구하는 각종 안전, 환경 및 건강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과 생산공정개발에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과 관련된 각국의 규제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되고 강화되는 것이 분명한 추세이기 때문이다. 

24)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